

의안번호	2208946
의 퇴 인	한정애의원
회 답 일	2025.4.22.
추계번호	25B158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가능한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제1항) 4. 우수 저류 및 활용 5. 용수 및 하수의 재이용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제3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3조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우수 저류 등의 방법을 통한 수자원의 개발·활용 (안 제23조제1항)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우수 저류 및 활용과 용수 및 하수의 재이용의 방법을 통해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서 추가로 규정하는 우수 저류 및 활용 등의 방법으로 대체·보조 수자원을 개발·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현행법 제23조제1항¹⁾에 따라 생활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설치·운영 중

인 대체·보조 시설은 2024년 기준 3개소이며, 공업용수의 부족에 대비한 대체·보조 시설 1개소는 2025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임

[표 1] 용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대체·보조 시설 설치 현황

구분	시설명	위치	공급량 (m ³ /일)	취수시설	용도	준공년도	시행 주체
도 서	대이작도 지하수 저류댐	인천 옹진군	110	수직정 4개	생활용	2020년	환경부
	안마도 지하수 저류댐	전남 영광군	100	수직정 5개	생활용	2021년	환경부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	전남 완도군	1,100	집수매거 90m	생활용	2023년	환경부
내 륙	대산임해 산업지역 해수담수화 플랜트	충남 서산시	100,000	취수탑 1식 취수펌프장 1식	공업 용수	2025년 11월 예정	한국 수자원공사

자료: 환경부

- 다만, 안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개정안에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통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내용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추계가 어려움

□ 민간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이용에 대한 지원(안 제23조제3항)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이용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안 제23조제3항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이용에 대한 지원의 대상, 범위 및 수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구체

1) 제23조(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가능한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바닷물의 민물화
2. 지하수 인공함양(人工涵養)
3. 빗물 활용
4. 그 밖에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한 방법

적인 내용이 필요하나 개정안은 이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추계가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